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Regulation

『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』 발표

2026.03.12

감사위원회 지원센터
(Audit Committee Institute)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『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』 발표

법무부, 『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』 발표*

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지만,
이사의 주주총실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
경영판단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함

『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』	
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
적용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상장·비상장을 불문하고 상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적용
법적 효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본 가이드라인은 법무부의 해석을 반영한 것이나,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음

향후 계획

-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

(*1) 법무부, “이사들, 주주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”, 2026.2.25
법무부, “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”, 2026.2.25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「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」 발표

이사의 충실의무의 내용과 해석

상법 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
-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
해석

1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

-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전체를 집단으로 보고 그 집합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
- 예를 들어,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규모의 자산을 유출하여 회사의 유동성에 위협을 야기하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움

2 전체 주주 공정 대우 의무

-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 없이, 일부 주주의 권익이 다른 주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
-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주주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음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『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』 발표

이사의 바람직한 행위 기준

1

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·조사 및 검토

-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질문 및 자료 요청
- 이사들의 분석 및 판단 능력의 내실화
- 이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 절차를 내실화
- 필요한 경우, 적절한 외부 자문 등의 도움을 받을 것

2

회사 및 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

- 안건의 이해상충 여부에 관해 더욱 예민한 관심을 기울임
-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사안은 더 엄격하게 검토
- 주주간 공평·평등 확보를 위한 인식과 조치 필요

3

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

- 이사회 심의·결정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자각 필요
-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각을 견지
- 적법성 또는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보다 상대적인 비교와 절차 또는 요소들을 조금씩 조정하여 검토하는 접근방식을 고려

특별위원회의 활용(1/2)

01

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역할, 정보접근권 제공

- 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(임의적 기구)가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
 - 사안에 따라 독립성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
 - 거래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 신속히 설치되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특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거나, 특별위원회를 조력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도 가능
- ✔ 특별위원회가 거래 목적의 정당성, 거래 조건의 공정성, 거래 절차의 적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
 - 관련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가·관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빈도로 활동해야 함
 - 특별위원회의 업무부담 과중을 고려하여 회사 내 일정부서에서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거나 특별위원회에 별도 보수지급이나 배상보험 가입을 고려
- ✔ 특별위원회는 중요한 정보(미공개 정보 포함)에 접근 가능해야 함
 - 특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경우, 비밀유지의무 및 정보 누설 시 손해배상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『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』 발표

특별위원회 활용(2/2)

01

특별위원회의 권한의 범위

방안 1



특별위원회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이사회가 결정

- 특별위원회의 검토사항과 결과를 참고하고 이를 존중하여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
- 특별위원회 검토결과와 다른 결론을 이사회가 내릴 경우 그 사유와 근거에 대한 문서화 필요
-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

방안 2



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최종 의사결정

-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의사결정 실시
→ 명시적 권한 위임 필요
-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는 특별위원회에 참여 불가

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

02

주주의 관점에서 명확한 설명을 제공

- 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은 주주의 합리적 판단과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
 -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, 대안 검토과정, 이해상충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주주 입장에서 해당 의사결정의 절차적·실질적·공정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
- ✔ 현행 법령상 통지·공고·공시·보고 의무를 시행함에 있어 회사 및 주주의 관점에서 해당 안건의 중요성과 효과에 관해 충실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(예시, 상장사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공시)
- ✔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폐쇄기업화 거래(상장폐지 절차)에서 주식인수·교환·현금 교부에 대하여 이사회가 의견서의 형태로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

Majority of Minority(소수주주의 다수결 결의)

03

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승인 또는 그 결과활용

- ✓ 해당 거래에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를 찬성 조건으로 정하고, 이를 공표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에서 해당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
- ✓ 주주평등원칙이나 현행 국내 법령 적용 측면에서 문제점 내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승인 요건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

〈국내 사례 A사〉

- 회사는 사외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주 설문, 외부평가, 내부평가 등을 바탕으로 합병 추진 여부를 검토함
- 특별위원회는 합병 시너지는 있으나, 주주 반대와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등 제약으로 현 시점 합병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
 - 주주 설문 결과(대주주 제외 기준) 찬성 8.7%, 반대 36.2%로 다수 주주가 합병에 반대함
- 이사회는 검토 결과를 반영해 현 시점에는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「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」 발표

거래유형 1. 계열회사 간 합병

이사는 일부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신중하게 합병을 검토·결정해야 함

01_독립당사자 간 거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의 확보

- 지배주주 및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합병 당사회사별로 구성되어, 합병 여부, 시기, 조건, 거래구조 등을 각 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하여 공표를 고려

02_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

- 특별위원회에서 합병에 대한 평가, 협상, 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·절차적 공정성을 확보
- 경우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의 자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
 - 주주의 직접 손해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면 복수의 자문기관의 평가를 활용할 것을 고려

03_충실한 정보의 제공

- 상법·자본시장법·기업공시서식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반주주의 적절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·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
바로 보는 법규·정책

「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동규범 가이드라인」 발표

거래유형 2. 폐쇄기업화 거래

폐쇄기업화(상장폐지)

-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해당 상장회사의 잔여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취득하면서 해당 회사를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일체의 거래를 포괄
- 일반적으로 ① 공개매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먼저 확보한 후, ②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잔여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

01_대상회사의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

- 폐쇄기업화를 위한 공개매수가 시행될 경우,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이사는 해당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고려

02_공개매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

- 대상회사 이사는 공개매수자가 제안한 공개매수 가격이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검증을 위해서 독립적 외부전문가에게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고려

03_주식교환 대가로 지급되는 교부금에 대한 공정성 검토

- 대상회사의 이사는 현금 교부금의 지급시점이나 조건 결정 시 적어도 공개매수 가격과 동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
- 계열회사 간 합병 시 공정성 강화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